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51호

도시철도 역명 제정 확정 고시

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역명 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.

2018년 8월 9일
서울특별시장

1. 도시철도 9호선 역명 제정(6개역)

구 분	위 치	역 명
931	송파구 백제고분로 187	삼 전
932	송파구 삼학사로 53	석촌고분
934	송파구 백제고분로 446	송파나루
935	송파구 방이동 88-21	한성백제
937	강동구 강동대로 305	둔촌오륜
938	강동구 명일로 117	중앙보훈병원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53호

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32호('08.12.04.)로 합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4호('10.01.21.)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81호('11.12.15.), 제2012-145호('12.06.07.), 제2012-269호('12.10.11.), 제2013-196호('13.06.27.), 제2014-65호('14.02.27.), 제2015-89호('15.04.02.), 제2015-225호('15.07.30.), 제2015-232호('15.08.06.)로 변경 결정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8월 9일
서울특별시장

1.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: 변경없음

지구명	유 형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합정재정비촉진지구	중심지형	마포구 합정동, 서교동, 망원동 일대	297,998.2	

2.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

구 분	사업방식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총계				297,998.2	－	297,998.2	
촉진구역	소계			69,108.8	－	69,108.8	
	도시환경정비사업	합정1구역	합정동 419-1 일대	37,309.4	－	37,309.4	
		합정2구역	합정동 385-1 일대	16,297.3	－	16,297.3	
		합정3구역	합정동 384-1 일대	10,544.9	－	10,544.9	
		합정4구역	합정동 382-44 일대	4,957.2	－	4,957.2	
존치정비	합정5~9구역		합정동 383-14 일대	21,616.0	－	21,616.0	
존치관리	－			207,273.4	－	207,273.4	

3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

가. 결정(변경) 취지 : 「건축법」 상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(지구단위계획)에서 도로사선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건축물 높이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

나.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

☐ 건축물 높이 결정조서(기정)

구 분		최 고 높 이	비 고
일반상업지역	간선가로변	80m 이하	•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(H≤1.5D) 배제
	이면부	60m 이하	
제3종일반주거지역	-	50m 이하	
제2종(7층)일반주거지역	-	10층 이하	•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(H≤1.5D) 동시 적용
특별계획 5,6,7,8,9구역	간선도로변	120m 이하	•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(H≤1.5D) 배제

- 주1) 최고높이를 초과하는 기존 건축물은 현재 건축물 높이 적용
 주2) 제2종(7층)일반주거지역은 7층에서 10층 이하로 높이 완화
 주3) 특별계획구역 1~4구역은 기 결정된 정비계획 내용에 따름
 주4) 특별계획구역(5~9구역)의 높이계획은 상위계획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,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) 결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상위계획 변경시 변경내용을 따름

☐ 건축물 높이 결정조서(변경)

구 분		최 고 높 이	비 고
일반상업지역	간선가로변	80m 이하	-
	이면부	60m 이하	
제3종일반주거지역	-	50m 이하	-
제2종(7층)일반주거지역	-	10층 이하	-
특별계획 5,6,7,8,9구역	간선도로변	120m 이하	-

- 주1) 최고높이를 초과하는 기존 건축물은 현재 건축물 높이 적용
 주2) 제2종(7층)일반주거지역은 7층에서 10층 이하로 높이 완화(단, 7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건축물 높이 변화를 검토한 후 자치구 건축심의위원회 등 자문을 받아야 함)
 주3) 특별계획구역 1~4구역은 기 결정된 정비계획 내용에 따름
 주4) 특별계획구역(5~9구역)의 높이계획은 상위계획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,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) 결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상위계획 변경시 변경내용을 따름

다.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 없음

4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)
 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5. 기타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 및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
 (☎ 02-2133-7224)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(☎ 02-3153-9373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■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

